



사다리 이용 작업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

사다리에서 벽면 마감작업 중 떨어짐

2020.06.12.(금) 서울시 서초구 소재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A형 사다리 위에 올라 도장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사다리와 함께 넘어져(H≒1.2m) 사망함



재해발생원인

→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!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지침 안내

발붙임 사다리(A형, 조경용)	작업 높이	안전작업 지침
	1.2m 미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드시 안전모 착용
	1.2m 이상 ~ 2m 미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최상부 밧판에서 작업금지
	2m 이상 ~ 3.5m 이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드시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및 안전대 착용 최상부 밧판+그 하단 디딤대 작업금지
	3.5m 초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작업발판으로 사용금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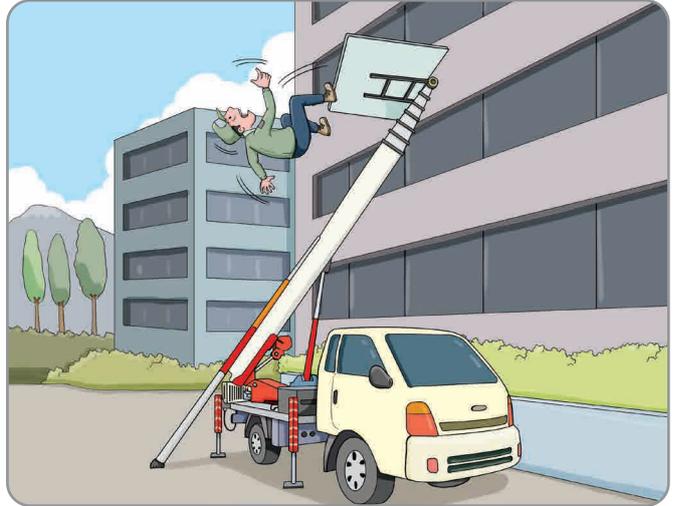
- ▶ 평탄·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
 - ▶ 경작업*, 고소작업대·비계 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
- *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사용하는 작업으로서 전구교체 작업, 전기·통신 작업, 평탄한 곳의 조경작업 등
 ※ 사다리 구조 등 그외 안전보건조치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준수



사다리차 이용 작업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

사다리차(이삿짐운반용 리프트) 운반구 위에서 폐자재 운반 중 떨어짐

2020.06.10.(수) 서울시 양천구 소재 실내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철거 폐자재를 사다리차 운반구에 싣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짐(H≒12m)



재해발생원인

- 추락방지조치 안된 운반구에 탑승
- 안전대 미착용·미부착



재해예방대책

→ 사다리차 운반구 탑승 금지!

*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10항 : 사업주는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.



동종재해사례



▶ 경기도 안양시



▶ 경기도 시흥시